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,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추가, 혁신제품의 발굴·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 센터의 지정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

“공공조달성과위원회”를 신설하고,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7조)

나. 조달통계의 정책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작성 대상에 추가된 입찰,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통계 작성 및 자료요구 대상에 구체적으로 반영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

다. 실시간으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나라장터와 연계할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체화(안 제9조제4항)

라. 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청장의 자료요청 대상 명확화(안 제10조)

- 마.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기준, 절차, 연도별 제출서류,
지정기간,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(안 제33조의2)
- 바.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기준 및 절차, 등기사항, 운영에
필요한 사항, 감독기준 등을 정함(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6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”를 “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5조제1항제2호, 제4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”를 “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3. 공공조달성과위원회: 법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나. 조달특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조달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성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관의 장이 체결한 계약”을 “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입찰·계약·대금지급 등(하도

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관별·기업별·계약방법별”을 “기관별·기업별·입찰방법별·계약방법별·대금종류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조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조달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가기관등에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계약의 체결 및 변경”을 “입찰공고, 계약, 대금지급 및 이와 관련된 변경 등(하도급”으로, “포함한 계약”을 “포함한다)에 관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1. 추정가격·계약금액·대금지급액의 총액 등(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 조달업무와 관련된 자료

④ 법 제9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1.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
2.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
3.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
4. 그 밖에 국가기관등이 재정에 관한 업무 또는 조달업무(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

스텝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자료제공의 요청)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·수입 또는 반송신고서
2.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)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확한 사업목표와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가진 비영리법인일 것
2.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
3.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,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보유할 것

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

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, 신청인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, 예산집행 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⑥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

제36조제2항 중 “법 제20조제4항”을 “법 제2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43조 앞에 “제9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9장(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6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

제42조의2(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)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기업 등이 조달기업 공제조합(이하 “공제조합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조달청장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

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.

제42조의3(공제조합의 등기) ① 공제조합은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업
4. 사무소의 소재지
5. 설립인가 연월일
6.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
7.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
8.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)
9.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
10. 대리인에 관한 사항
11. 공고의 방법

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(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)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.

제42조의4(기본재산의 조성)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재원”이란 다음 각호의 재원을 말한다.

1. 조합원의 공제부금·예탁금
2. 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·출연금 또는 예탁금
3.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
4. 그 밖의 수입금

②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 및 출연금을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, 손실보전준비금을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.

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,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.

제42조의5(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)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6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7. 조합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8.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9.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10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11. 잉여금·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
12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13.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
14.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
15. 공고에 관한 사항
16. 대리인에 관한 사항
1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제42조의6(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) ①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.

1.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
2. 조합원의 재정 실태 등 공제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
3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5.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

③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제

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.

④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2조의7(공제조합의 사업)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조달계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조·생산·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공제사업
2.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
3.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조합원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
4.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조사·연구 사업
5.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(受注)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
6.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투자 사업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

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조달계약에 대한 자금의 융자
2.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
3. 제1항제5호의 사업

제42조의8(조사 및 검사)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조달청장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.

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2조의9(출자 및 출자증권 등)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.

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,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.

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.

제42조의10(지분의 양도 등)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
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.

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⑤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지시채권(指示債權)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.

제42조의11(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)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.

1.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

2.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(除名)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 취득을 요구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: 자본금의 감소 절차

2.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: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

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2조의12(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)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제조합은 제42조의11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.

제42조의13(대리인의 선임)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42조의14(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)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(이하 이 조에서 “준비금“이라 한다)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금대여액·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.

③ 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·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15(이익금 등의 처리)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
1. 이월손실금의 보전
2.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
3. 이익준비금의 적립
4. 사업준비금의 적립
5. 이익금의 배당

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「민법」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. 다만,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.

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 배당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16(배상책임 등)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 다만,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

임을 경감할 수 있다.

제4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장 보칙

제44조 중 “별표”를 “별표 2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를 별표 2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33조의2제6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다. 조달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
 - 2) 혁신제품의 공공구매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7조의2 제3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	법 제27조의2 제3항제2호	지정취소		
다.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	법 제27조의2 제3항제3호	시정명령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, <u>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</u> 를 둔다.	제7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</u> <u>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</u>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공공수요발굴위원회: 법 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~ 다. (생략) <신설>	1. ----- <u>법 제5조제1항제2호, 제4호</u>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</u> 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
라. (생략)	
2.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: 법 제5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(생략) 나. <u>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u>	2. ----- <u>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</u> -----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<삭제>

다.·라. (생략)
<신설>

③ ~ ⑦ (생략)
제9조(조달통계의 작성) ① (생략)
②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.

1. (생략)
2. 기관별·기업별·계약방법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

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3. 공공조달성과위원회: 법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나. 조달특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다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조달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성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9조(조달통계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-----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입찰·계약·대금지급 등(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기관별·기업별·입찰방법별·계약방법별·대금종류별 --

3. (생략)

③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(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체결한 물품·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계약금액의 총액 등 전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2.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 건별 자료

3. (생략)

<신설>

3. (현행과 같음)

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조달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가기관등에 요구할 수 있다.

1. 추정가격·계약금액·대금지급액의 총액 등(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 조달업무와 관련된 자료

2. 입찰공고, 계약, 대금지급 및 이와 관련된 변경 등(하도급----- 포함한다)에 관한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9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·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(자료제공의 요청)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·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

1.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

2.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

3.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

4. 그 밖에 국가기관등이 재정에 관한 업무 또는 조달업무(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

⑤ ·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⑦ ----- 제6항-----

-----.

제10조(자료제공의 요청)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

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에는 관세청장에게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·수입 또는 반송신고서

2.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

제33조의2(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) ① 법 제27조의2 제6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확한 사업목표와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가진 비영리 법인일 것

2.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

3.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,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보유할 것

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

출하여야 한다.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, 신청인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,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⑥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

제36조(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

제36조(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

한 등) ① (생략)

②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거나 차액을 환수하려는 경우 그 사유, 등록제한 기간이나 환수금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문서로 이용업체에 통지해야 하며, 이용업체의 등록 제한이나 차액의 환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장 보칙

<신설>

<신설>

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법 제29조제4항 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

제42조의2(공제조합의 설립인가

절차 등)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기업 등이 조달기업 공제조합(이하 "공제조합"이라 한다)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조달청장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

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

<신 설>

이를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.

제42조의3(공제조합의 등기) ①

공제조합은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사업

4. 사무소의 소재지

5. 설립인가 연월일

6.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

7.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

8.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)

9.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

10. 대리인에 관한 사항

11. 공고의 방법

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(사

<신 설>

무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)이
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
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
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 다만, 제
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
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
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
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
다.

제42조의4(기본재산의 조성) ①

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재원”이란 다
음 각호의 재원을 말한다.

1. 조합원의 공제부금·예탁금
2. 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
의 출자금·출연금 또는 예탁
금

3.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②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
자금 및 출연금을 자본계정의
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,
손실보전준비금을 자본계정의
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
처리한다.

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

<신 설>

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 되,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.

제42조의5(공제조합의 정관 기재 사항)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 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6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 퇴에 관한 사항
7. 조합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8.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 법 등에 관한 사항
9.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 리에 관한 사항
10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11. 잉여금·적립금 및 손실금 의 처리에 관한 사항
12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13.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
관한 사항

14.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

15. 공고에 관한 사항

16. 대리인에 관한 사항

1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제42조의6(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) ① 공제조합의 운영에
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
다.

②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
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
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
야 한다.

1.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
회 의결 사항

2. 조합원의 재정 실태 등 공제
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
사항

3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
퇴에 관한 사항

4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
항

5.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
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

<신 설>

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
관한 사항

③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업무
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
여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
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
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이
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
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.

④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
산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의 승인
을 받아야 한다.

제42조의7(공제조합의 사업) ①

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
란 조달계약의 건전한 발전을
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
다.

1.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
제조·생산·연구시설 및 장비
등에 관한 공제사업
2.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필요한
기자재의 구매알선
3.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
치·운영 및 조합원의 편의증
진을 위한 사업

<신 설>

4.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조사·연구 사업

5.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(受注)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

6.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투자 사업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조달계약에 대한 자금의 융자

2.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

3. 제1항제5호의 사업

제42조의8(조사 및 검사)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조달청장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

<신 설>

<신 설>

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.

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의4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제42조의9(출자 및 출자증권 등)

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.

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,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.

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.

제42조의10(지분의 양도 등)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

<신 설>
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
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
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
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
「상법」에 따른 주식의 양도
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.

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
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
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
수 없다.

⑤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
채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
가압류 또는 압류는 「민사집행
법」에 따른 지시채권(指示債
權)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
으로 한다.

제42조의11(공제조합의 지분취득
등)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가 있을 때에만 조합원 또는 조
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
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3
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
취득하여야 한다.

1.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

<신 설>

2.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
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
제명(除名)되거나 탈퇴한 자
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
공제조합에 그 지분 취득을
요구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
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
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
경우: 자본금의 감소 절차

2.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
유로 취득한 경우: 다른 조합
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
에게 처분

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
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
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
할 수 없다.

제42조의12(출자증권의 명의 변경
등)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
던 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
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

<신 설>

<신 설>

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제조합은 제42조의11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.

제42조의13(대리인의 선임)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42조의14(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)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(이하 이 조에서 "준비금"이라 한다)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금대여액·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

<신 설>

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
이내에서 하여야 한다.

③ 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
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
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
사용하지 못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비
금의 적립·운용에 관한 세부
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15(이익금 등의 처리) ①

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
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
1. 이월손실금의 보전
2.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
3. 이익준비금의 적립
4. 사업준비금의 적립
5. 이익금의 배당

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
남은 재산은 「민법」 제80조에
따라 처리한다. 다만, 남은 재산
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
결의에 따라 처리한다.

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
배당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중 주
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
준용하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<신 설> 제4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<u>별표</u>와 같다.	은 정관으로 정한다. 제42조의16(배상책임 등)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 다만,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. <u>제10장 보칙</u>
<신 설> 제4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<u>별표</u>와 같다.	제4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 ----- <u>별표 2</u>----

제42조의16(배상책임 등) ① 공제 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 다만,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.

제4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

----- 별표 2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236